## ●환경부공고 제2024-410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01일

환경부장관

#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을 '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'(기존 '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'에서 명칭변경('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기능이 환경부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2개를 폐지(안 제2조)
- 나.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,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및 재심사 청구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(안 제45조의2, 안 제45조의6, 안 제45조의10)

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
- 전자우편 : jschoi1204@korea.kr
- 팩스: 044-201-6823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(전화 044-201-6813, 팩스 044-201-68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